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5
----------	-----

제출년월일 : 2000.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기획관리국 총무과

□ 개정이유

대통령령인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개정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이 조정됨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과 근무상한연령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및 안 제8조제1항)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담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시킬 수 있던 조항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직권면직 조항 강화(안 제10조제1호)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조정(안 제11조)
- 군입대에 의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명시(안 제11조의2)
- 휴직의 효력조항 신설(안 제11조의3)
 - 휴직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 군입대 휴직 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지체없이 복직

□ 개정근거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총무처 예규 제326호)
-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대통령령 제15956호)
-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교육부 학총 12100-784)

개정조례안 : 별첨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 별첨
-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표준안 : 별첨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은 국가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일반직 상당 계급별 연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면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5급상당)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p> <p>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p>

관 계 법 령

□ 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총무처 예규 제326호, '97.12.29)

2.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가. 적용대상

이 예규는 각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1급 내지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이하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나. 임용자격

- 1) 임용제청권자는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군에서 전역한지 1년미만인 전투병과 출신장교를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의 자질이 탁월하거나 기타 업무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역한 후 1년이 경과후 전투병과 출신장교와 기타병과 출신장교 및 비상업무담당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도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임용제청할 수 있다.
- 2) 군 경력자의 비상업무담당공무원 임용시 임용예정상당계급별 군경력기준은 "공무원 임용및시험시행규칙"(총리령) 별표5 "특별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을 준용한다.

다. 근속년수

4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은 당해 상당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제청권자는 근속년수 연장의 필요성, 인사기록카드 사본,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의 근속년수 연장 심의결과통보서(사본)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근속년수 5년에 도달하기 1월 이전에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대통령령 제15956호, '98.12.31)

제6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연령은 별표와 같다.

[별표]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 연령표

직무분야 \ 구분	일반직상당계급	근무상한연령
비 상 계 획	5급상당이하	55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교육부 학총 12100-784('98. 9. 22)]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6월이상”을 “○○광역시(특별시·도·시·군·자치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잠깐!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우361-703 / 주소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전화 (0431)279-0229 /전송(0431)271-8696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과장 박영하 사무관 연승훈 담당자 이찬동

문서번호 의사 81433 - 78

시행일자 2000. 03. 31.

(공 개)

수신 충청북도교육감

참조 기획관리과장

선발	교육감	추진	지시	
일시	2000. 3. 31.	결재	교육감	추진
절수	번호	1889	기획관리과장	추진
처리과	기획관리과	공람	기획관리과장	추진
담당자	신영석	의의담당	추진	추진
심사자		심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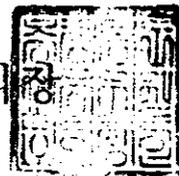
제목 의안이송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을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을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송합니다.

의안번호	안건명	심사결과
111-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1-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1-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1-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1-5	2001학년도초·중통합운영학교설치계획안	원안가결
111-6	학교설립계획안	원안가결
111-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원안가결
111-8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의결

덧붙임 : 의안 각 2부. 끝.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장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2000 - 32 호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에 부의 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3월

충청북도교육청



부 의 안 건	주 요 골 자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7,527억 4,336만 3천원에서 세입·세출예산 각각 587억 9,778만 3천원이 증액된 8,115억 4,114만 6천원으로 편성 ○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8억 9,159만 4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2,462만 3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558억 8,156만 6천원 증액 ○ 세출예산 학교교육 514억 815만 5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2억 1,923만원, 급여·복지 39억 4,032만 3천원, 교육행정 32억 2,604만 4천원, 기타경비 403만 1천원 계상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부 의 안 건	주 요 골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로 기간 확대 ○ 퇴직준비휴가의 범위를 “정년퇴직 및 명예 퇴직 공무원”에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공무원”으로 확대 ○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을 포함 하였으나,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포함 함 ○ 경조사별 휴가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28명에서 5명을 감축하여 2,823명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과 근무상한연령을 명확히 규정함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담당 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시킬 수 있던 조항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직권면직 조항 강화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조정 ○ 군입대에 위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명시 ○ 휴직의 효력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 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 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 군입대 휴직 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지체없이 복직

부 의 안 건	주 요 골 자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도 조례중 학생수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병설 및 통합학교의 위원정수 산정기준을 명시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법 및 시행령 조항 수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권이 초·중등교육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본항 삭제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